

[주의] 고객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개별 상품의 약관,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는 상품에 대한 약관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포트폴리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경우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핵심 설명서]

□ 디폴트옵션상품 특징 및 운용유형

상품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제도)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디폴트옵션상품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입니다. ○ 디폴트옵션상품은 위험자산한도 규제(70%)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전체 퇴직연금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하는 가입자는 운용대상을 언제든지 스스로 선정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용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폴트옵션상품은 다음과 같은 운용유형으로 구성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품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원리금보장상품</td> <td>일반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F (Target Date Fund)</td> <td>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집합투자증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F (Balanced Fund)</td> <td>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자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VF (Stable Value Fund)</td> <td>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td> </tr> </tbody> </table>	상품유형	내용	원리금보장상품	일반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TDF (Target Date Fund)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집합투자증권	BF (Balanced Fund)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자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SVF (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상품유형	내용										
원리금보장상품	일반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TDF (Target Date Fund)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집합투자증권										
BF (Balanced Fund)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자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SVF (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SOC 펀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운용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쉽게 운용합니다. ○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가입자 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합니다. ○ 예상 수익이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운용합니다. ○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운용합니다. ○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하여 과하지 않도록 운용합니다. ○ 상시가입이 가능하며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운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사전지정운용방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상품명	원리금보장여부	디폴트옵션 적용위험등급	예금자보호여부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형	초저위험	대상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	원리금비보장형	저위험	대상아님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	원리금비보장형	저위험	대상아님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	원리금비보장형	중위험	대상아님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	원리금비보장형	중위험	대상아님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	원리금비보장형	고위험	대상아님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BF 1	원리금비보장형	고위험	대상아님

□ 디폴트옵션상품 가입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디폴트옵션상품 가입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디폴트옵션상품 가입 시 상품을 구성하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비용은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경우 펀드의 매매와 운용에는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탁보수(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펀드 가입기간 중 위 각 기관에 지급하기 위하여 펀드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시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가능한가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 혼합된 디폴트옵션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자동재예치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상품의 경우 만기 도래 시 가입자통지 및 대기기간 등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디폴트옵션상품 가입시 기존 상품 만기일에 바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되나요?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됩니다.

◆ 디폴트옵션상품 가입시 부담금을 납입하면 바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되나요?

DC/IRP 신규가입자가 디폴트옵션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부담금 입금시마다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매수됩니다.

◆ 펀드로만 투자하고 있던 기존 가입자도 디폴트옵션상품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가입자의 디폴트옵션상품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전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디폴트옵션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100% 투자한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되나요?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100% 투자한 경우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만기가 있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은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됩니다.

◆ 가입자의 투자성향이 사전에 선정한 디폴트옵션상품과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상품의 지정 시점과 적용 시점의 차이로 인해 투자성향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선정해 둔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투자성향에 맞는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을 더이상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Opt-Out, 옵트아웃)

가입자가 옵트아웃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옵트아웃)를 하면 됩니다. 즉, 옵트아웃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상품을 다른 디폴트옵션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상품의 경우, 각각의 상품을 별도로 운용지시(매수/매도) 할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상품이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경우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된 개별상품을 날개로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매수일자별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예금을 포함한 디폴트옵션상품의 경우 환매 제약은 없나요?

디폴트옵션상품을 매도 할 경우 개별 상품별 매도는 불가능하고 전체 구성상품(포트폴리오 전부)에 대해 동일 비율로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성상품 중 예금은 매수일자별 2회까지 매도가 가능하며 3회째에는 해당 부담금 잔액이 전부 자동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상품 전체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인출은 매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민원, 상담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고객의 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설명서]

□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개요

상품명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구성	유형	상품명	위험등급	투자비중
	예금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정기예금 3년	매우낮은위험(6등급)	50%
	예금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3년	매우낮은위험(6등급)	50%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중 하나(예금)로 자산의 전부를 운용			
위험등급	매우낮은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도 5.00) * 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승인번호	제 2022-024 호	고용노동부 승인일자	2022년 11월 02일	
수수료	없음			
가입대상	예금 또는 적금 이자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DC/IRP 가입고객			
투자자 유의사항	-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예치기간 및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매우 낮으나 실질금리를 고려했을 때 장기운용시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내 원리금보장상품에 관한 사항

○ 원리금보장상품1(포트폴리오 내 투자비중 50%)

상품명	한국증권금융 정기예금 3년 (신용등급: AAA)					
상품제공기관	한국증권금융	투자유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위험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만기	3년			
상시가입여부	가능	이율 적용방식	확정금리형			
예금자보호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중도해지이율	① 기본산식: 약정이율 x 중도해지이율 비중					
	일반 중도 해지	2025.05.31 까지			2025.06.01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납입기간경과율 (예치일수/약정일수)	중도해지이율비중	비고	이율	비고
		20% 미만	A X 10%	최저 이율 0.20%	중도해지금리 = 약정금리 X 80%	일반중도해지이율이 0.2%미만시 0.2% 적용
		20% 이상 ~ 40% 미만	A X 30%			
		40% 이상 ~ 60% 미만	A X 50%			
		60% 이상 ~ 80% 미만	A X 60%			
	80% 이상 ~ 100% 미만	A X 80%				
	※ A : 약정이자율			※ 시행일(2025.06.02) 이후 신규 및 재예치 예금에 한하여 적용		
	특별 중도 해지	예치기간			이율	
24 개월 미만			12 개월제 약정이율			
24 개월 이상			24 개월제 약정이율			
※ 퇴직, 중도인출 등 약관에 정한 사유로 출금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매월 변동되는 항목으로 디폴트옵션 안내자료에 기재					

○ 원리금보장상품2(포트폴리오 내 투자비중 50%)

상품명	우리은행 정기예금 3년 (신용등급: AAA)		
상품제공기관	우리은행	투자유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위험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만기	3년
상시가입여부	가능	이율 적용방식	확정금리형
예금자보호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게시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됨					
일반 중도 해지	2025.05.31 까지			2025.06.01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보유기간	이율	비고	보유기간	이율
	3개월 미만	연 0.1%	최저 이자율 0.15%	3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8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A X 50% X B / C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A X 70% X B / C		32개월 이상	약정이율 X 9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A X 80% X B / C			
11개월 이상	A X 90% X B / C	※ 약정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A : 기본이자율, B : 경과일수, C : 계약일수					
특별 중도 해지	예치기간		이율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퇴직, 중도인출 등 약관에 정한 사유로 출금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 추가 공금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매월 변동되는 항목으로 디폴트옵션 안내자료에 기재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위험도 체계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판매사 디폴트옵션 위험도	상품투자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1.0~1.8 (초고위험)		1.9~2.6 (고위험)	2.7~3.4 (중위험)	3.5~4.2 (저위험)	4.3~5.0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			-	저축은행 예금, 원리금보장ELB	은행 예적금, 국고채 등

디폴트옵션 상품투자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이 상품은 최대 투자원금 전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높은위험	이 상품은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이 상품은 투자원금의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이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위험	이 상품은 투자 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편입된 개별 상품의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

판매사 디폴트옵션 위험도	상품투자 위험등급	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보통위험	다소높은위험 / 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위험 Score		4.3~5.0	3.5~4.2	2.7~3.4	1.9~2.6	1.0~1.8

(예시)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구분	위험도				
	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보통위험	다소높은위험/ 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개별상품 위험도	5	4	3	2	1
편입비중	30%		30%	40%	
포트폴리오 위험도	$5 \times 30\%(0.3) + 3 \times 30\%(0.5) + 2 \times 40\%(0.4) = 3.2$ (중위험)				

- 유의: 포트폴리오 위험도는 편입상품의 특성, 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으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권리보호 안내

<p>디폴트옵션 상품 변경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p>	<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판매사는 그 사실을 변경 승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전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우편발송, 서면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할 수 있다는 사실 <p>위 사항에 대해 통지를 받은 가입자는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른 운용방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취소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p>	<p>디폴트옵션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는 가입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통지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취소사유 2. 승인 취소된 디폴트옵션상품의 해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디폴트옵션상품을 포함한 3가지 이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p>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되며, 적립금을 이전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p>
<p>위법계약해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요건: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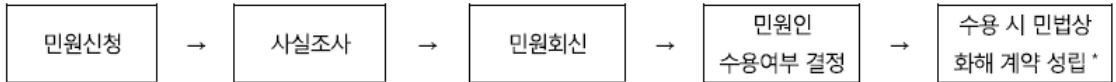
- 행사요건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열람 :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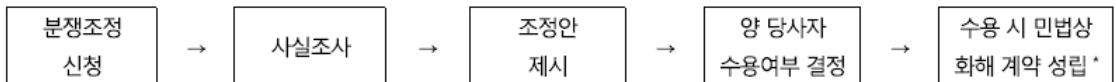
-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scs.kr)(PC)

**판매직원
확인사항**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 _____) 직위 : _____ 직원명 : _____ (서명)